

##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 제6.1조 목적 및 원칙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양자 및 다자 간 관세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과 원칙을 기반으로 협력하고, 상품에 대한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를 채택하고 적용하기로 합의한다.

가. 상품에 대한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가 효율적이고 비례적이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관리 및 선별절차를 유지하면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2)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하도록 한다.
- 3) 각 당사국은 최소한의 문서로 상품의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전자시스템이 세관 이용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 4) 각 당사국은 상품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이용한다.
- 5) 각 당사국은 수입, 수출 및 통과 사안을 포함하여 국경통제에 관여하는 자신의 관세당국 및 기관이 협력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정할 것을 보장한다. 그리고
- 6) 각 당사국은 관세사의 이용이 선택적이다록 규정한다.

나.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가 양 당사국이 수용한 국제 무역 및 관세 관련 합의문서와 표준에 근거해야 하며,

- 1) 국제 무역 및 관세 관련 합의문서와 표준은,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인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합의문서와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 2) 자료 요건 및 절차는 세계관세기구(이하 “세계관세기구”라 한다) 관세

자료모델 및 관련된 세계관세기구의 권고와 지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용되고 적용된다.

- 다. 요건 및 절차는 수입자, 수출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게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도록 한다.
- 라. 각 당사국은 새로운 또는 개정되는 중요한 요건 및 절차의 채택 이전에 이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역 공동체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 대표와 시의 적절하게 협의한다.
- 마. 위험관리 원칙 또는 절차는 주목할 만한 거래에 준수 노력을 집중하도록 적용된다.
- 바.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합의된 무역원활화 조치의 적용과 준수를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그리고
- 사.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한 조치는 국가 안보, 건강 및 환경의 보호와 같은 정당한 정책 목적의 달성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 제6.2조 상품의 반출

-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통관과 그 밖의 무역 관련 요건 및 절차를 채택하고 적용한다.
-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신의 관세당국, 국경기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요건과 절차를 적용하도록 보장한다.
  - 가. 자신의 관세 및 그 밖의 무역 관련 법과 형식의 준수를 보장하는 데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요건과 절차. 각 당사국은 반출 시간을 더욱 줄이도록 노력한다.
  - 나. 도착 시에 상품을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물리적 도착 전에 정보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최종 처리(“도착전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요건과 절차
  - 다. 적용 가능한 관세, 조세 및 수수료에 대하여 자신의 관세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이를 저해함이 없이, 수입자가 세관으로부터 상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요건과 절차<sup>1</sup>, 그리고  
라.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도착지점에서 상품  
이 자유로이 유통되도록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요건과 절차

### 제6.3조 간소화된 통관절차

양 당사국은 탁송화물의 물리적 도착 전 정보의 사전 전자적 제출 및 처리, 적은 횟수의 개장검사, 그리고 예를 들어 최소한의 문서로 하는 간소화된 신고에 대한 무역원활화를 포함하여 특히 상품의 더욱 신속한 반출 및 통관을 제공함으로써,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결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무역업자 또는 경제 운영자에게 간소화된 수입 및 수출 절차를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 제6.4조 위험관리

각 당사국은 자신의 관세당국이 검사 활동을 고위험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위험 상품의 통관 및 이동을 간소화하는 위험 분석과 선별을 위하여,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위험관리 시스템을 적용한다. 각 당사국은 자신의 위험관리 절차를 위하여 1999년도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교토협약”이라 한다) 개정판과 세계관세기구 위험 관리 지침을 이용한다.

### 제6.5조 특명성

1. 각 당사국은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하여 자신의 관세 및 그 밖의 무역 관련 법, 규

---

<sup>1</sup> 당사국은 수입자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 조세 및 수수료의 최종 지급액을 충당하는 충분한 보증을 담보, 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 및 일반적인 행정절차와 그 밖의 요건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매체를 통해, 그리고 실행할 수 있고 가능한 경우 공식적인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용이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관세 및 그 밖의 무역 관련 사안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질의를 다루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질의처 또는 정보처를 지정하거나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무역 공동체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의 대표들과 협의하고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협의 및 정보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중요한 요건 및 절차를 대상으로 하며, 채택 전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제공된다.

### 제6.6조 사전심사

1. 무역업자로부터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신의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 원산지 또는 그 당사국이 결정하는 그 밖의 문제에 관해 서면 사전심사 결정서를 자신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발급한다.

2. 각 당사국은, 자신의 법과 규정상의 비밀유지 요건을 조건으로, 품목분류 및 그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에 관한 자신의 사전심사 결정을, 예를 들어 인터넷에 공표한다.

3.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사안에 관한 그들 각자의 법령의 변경에 대한 정기적 갱신을 그들의 양자대화에 포함한다.

### 제6.7조 불복청구 절차

1.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과 그 밖의 수입, 수출 및 통관 요건과 절차의 결정에 관하여, 그러한 결정의 대상이 된 관련인이 그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불복청구에 접근할 수 있

도록 보장한다. 당사국은 불복청구가, 사법당국이나 행정재판소가 될 수 있는 상위 독립 기관에 의한 재심에 앞서, 동일한 기관, 그 감독당국 또는 사법당국에 의해 먼저 심리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그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대한 재심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적 재심을 수행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행정적 재심을 수행하는 당사국에게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8조

#### 비밀유지

1. 제6.7조에 따라 요청된 경우를 포함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인 또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당국에 제공한 어떠한 정보도 각 당사국에게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비밀 또는 제한적인 성격으로 취급된다. 이는 공식적인 비밀엄수 의무의 대상이 되고, 이를 받은 당사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유사한 정보에 주어지는 보호를 받는다.

2. 개인 자료는 그 자료를 받는 당사국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당사국에서 그 특정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과 최소한 동등한 방식으로 그러한 자료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만 교환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인은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적용 가능한 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어떠한 요건도 요구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이를 제공하는 인 또는 당국의 명시적 허락 없이, 이를 받은 당사국의 당국에 의해 제공된 것 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국의 명시적 허락을 받은 경우 외에는,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법적 절차와 연계하여 그것을 받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렇게 할 의무가 있거나 권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인에게도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되지 아니 한다. 그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국은, 가능한 경우 사전에, 그러한 공개를 통보받는다.

5. 당사국의 당국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인에게 법적 절차와 연계된 정보 공개의 모든 가능성을 통보한다.

6. 요청하는 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인이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3자 또는 그 밖의 당국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신청하는 경우,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고 개인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이용 가능한 조치를 적절한 경우 언제나 사용한다.

### 제6.9조 수수료 및 부과금

관세와 제2.3조(관세)에 따라 관세의 정의에서 제외된 항목 외에,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에 대하여,

- 가. 수수료 및 부과금은 해당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나 그러한 수입 또는 수출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모든 형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 나. 수수료 및 부과금은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다. 수수료 및 부과금은 종가세 방식으로 계산되지 아니한다.
- 라. 수수료 및 부과금은 영사서비스에 관하여 부과되지 아니한다.
- 마. 수수료 및 부과금에 관한 정보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매체를 통해, 그리고 실행할 수 있고 가능한 경우 공식적인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된다. 이 정보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 또는 부과금이 부과된 이유, 담당 당국, 적용될 수수료 및 부과금, 그리고 지급될 시기 및 방법을 포함한다. 그리고
- 바. 새로운 또는 개정된 수수료 및 부과금은 마호에 따른 정보가 공표되고 용이하게 이용 가능해지기 전까지 부과되지 아니한다.

### 제6.10조 선적 전 검사

어떠한 당사국도 선적 전 검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것의 이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제6.11조 통관사후심사**

각 당사국은 무역업자에게 효율적인 통관사후심사의 적용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통관사후심사의 적용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요건 또는 부담을 무역업자에게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6.12조 관세평가**

관세평가협정은, 관세평가협정 제20조 및 부속서 3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유보 및 선택권을 제외하고,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 **제6.13조 관세협력**

1. 양 당사국은 관세 및 관세 관련 사안에 대해서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국제기구가 이와 연계해서 행한 작업을 고려하여, 관세 사안에서의 무역원활화 조치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한다. 이는 새로운 관세 절차의 시험을 포함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은 상품의 합법적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며,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통관 기술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전산화 시스템에 관한 전문성을 교환한다.
4. 양 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 가. 상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에 대한 관세 관련 사안에서 양 당사국 간 무역의 흐름을 확장하고, 관세 절차를 단순화하는 협력을 강화한다.

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무역에 사용된 문서 및 자료 요소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

- 나. 관세분석소와 과학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분석 방법의 조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
- 다. 세관 직원을 교환하는 것
- 라. 관세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관세 관련 문제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조직하는 것
- 마. 무역 및 비지니스 공동체와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
- 바.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수입 상품의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원산지 결정에 상호 지원하는 것
- 사. 수입, 수출, 재수출, 통과, 환적 및 그 밖의 통관절차에 대하여, 그리고 특히 위조품에 대하여 관세당국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적재산권 집행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 아. 무역을 원활히 하면서, 모든 지역으로부터 양 당사국으로 수입, 환적 또는 통과 되는 해상화물과 그 밖의 선적의 보안을 증진하는 것. 양 당사국은 강화되고 확대된 협력의 목적이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 1) 국제무역의 물류망을 확보하기 위한 세관 관련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 그리고
    - 2) 가장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화물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적절히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는 모든 다자간 포럼에서 입장을 조율하는 것

5. 양 당사국은 그들 간 기술 협력이 이 협정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준수를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무역원활화를 성취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관세와 관세 관련 분야에서 협력 조치의 범위, 시기 및 비용에 관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당사국의 관세 행정기관을 통하여 합의한다.

6. 양 당사국은, 각자의 관세 행정기관과 그 밖의 국경 관련 당국을 통하여, 심화된 공동 행동이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고 공유된 다자간 목적을 증진할 분야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히 세계무역기구 및 세계관세기구에서의 관련 활동을 포함한 무역원활화에 관한 관련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검토한다. 양 당사국은 관세 및 무역원활화 분야의 국제기구, 특히 세계무역기구 및 세계관세기구에서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공통의 입장을 수립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7. 양 당사국은 이 장,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그들 각자의 관세 법 또는 규정의 이행 및 집행에서 서로 지원한다.

### 제6.14조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

1. 양 당사국은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제9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의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 제6.15조 관세 접촉선

1. 양 당사국은 이 장과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지정된 접촉선의 목록을 교환한다.
2. 접촉선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운영사안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사안이 접촉선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그 사안은 이 장에 언급된 관세위원회에 회부된다.

### 제6.16조 관세위원회

1. 제15.2조(전문위원회)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관세위원회는 이 장과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고, 그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관세위원회는 제15.1조(무역위원회)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2. 관세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관세 및 무역원활화 사안,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세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3. 관세위원회는 의사규칙을 채택하고 매년 회합하며, 회합장소는 양 당사국 간 교대로 한다.
4.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위원회는 무역원활화, 품목 분류, 상품의 원산지 및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을 포함하여, 특히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제7조 및 제8조와 관련하여, 이 장과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에 포함된 사안에서 양 당사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논의하기 위해 회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5. 관세위원회는, 이 장과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에 수립된 메커니즘의 공동의 목적과 전한 기능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결정, 권고 또는 의견을 제정할 수 있다.